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2
----------	-----

발의년월일 : 2015년 9월 11일

발 의 자 : 서윤기, 최판술, 유 용, 김정태,  
김광수(노원), 문상모, 김경자,  
이승로, 김선갑, 오경환,  
김진철, 박준희 의원(12명)

## 1. 제안이유

최근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발생 증가로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므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 있음

## 2. 주요골자

- 가. 시가 주택정책 수립·추진 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에 관한 노력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5항 신설)
- 나. 시·시민 및 주택사업자에게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에 관한 노력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3항제5호 신설)
- 다. 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 요건인 적정한 주거환경에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을 포함함(안 제7조제2항)
- 라. 시장은 주택사업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내용에 범죄예방환경설계 등을 포함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임대주택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는 주택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 고려

제7조제2항중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을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 등을 포함한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으로 한다.

제9조중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를 “범죄예방환경설계 등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시의 책무) ①~④ (생략)  <신설>	제3조 (시의 책무) ①~④ (현행과 같음)  <u>⑤ 시는 주택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4조 (시민의 노력 등) ①·② (생략) ③ 시·시민 및 주택사업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택의 형태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생략) <신설>	제4조 (시민의 노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4. (현행과 같음) <b>5.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 고려</b>
제7조 (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u>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u>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 등을 포함한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u> ----- -----.
제9조 (주거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주택사업자 또는 주택관련단체 등이 주택 및 <u>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u> 실시하는 조사·연구 및 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주거환경 개선지원) ----- ----- ----- <u>범죄예방환경설계 등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u> ----- -----.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시의 책무와 제 4조 시민의 노력 부분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의 노력을 추가하고, 제 7조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지원 대상과 제9조 조사연구 및 캠페인 지원 대상의 세부설명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포함하도록 부기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의 발생은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서윤기